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의 연장〉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67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이재강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2025. 6. 16.
3. 회 부 일: 2025.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함.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됨.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그런데 기간 내에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현행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20.9.24. 선고 2016헌마889),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신고절

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안 제12조 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복수국적자 중 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해의 12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②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가 편입된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③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신고기간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 ----- -----해의 12 월 31일까지----- ----- ----- ----- ----- ----- ----- -----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 ③ (생략)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무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신고 기간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까지의-----

-----공고 절차와 세부내용 및 그-----
-----.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① -----

-----해의 12월 31일까지-----

-----.

1. (현행과 같음)

2. -----

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 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 한 사유가 있을 것 ② ~ ⑤ (생 략)	----- -----해의 12월 31일까지-----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2. 국적이탈제도 개요

현행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¹⁾, 외국국적을 선택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의 뜻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다만, 복수국적자 중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남성³⁾은 그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즉,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우리나라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나⁴⁾⁵⁾,

1)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2)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3)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이 기간이 도과하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거나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38세(전시근로역 편입)⁶⁾부터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참고로,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병역준비역”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하

4)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5) 부가적으로 살펴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18세 3개월까지가 아닌 병역의무를 해소하거나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38세(전시근로역 편입 등)부터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함. 위 각주 4)의 현행법 제12조제3항 조문 참조

6)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이하 생략)

7)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각주 4)”를 참조)

8)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

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또한, 연도별·국적별 국적이탈신고 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3,261명, 2023년 3,903명, 2024년 3,607명 2025년 4,014명으로 최근 4년간 매년 3~4천명 가량의 인원이 국적이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국적별 국적이탈신고 현황('26년 5월말 기준)]

(단위 : 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월	
총 계	3,261	총 계	3,903	총 계	3,607	총 계	4,014	총 계	805
미 국	2,592	미 국	3,115	미 국	2,682	미 국	3,042	미 국	615
일 본	287	일 본	299	일 본	332	일 본	371	일 본	93
캐나다	151	캐나다	219	캐나다	212	캐나다	206	캐나다	43
호 주	62	호 주	58	호 주	151	호 주	137	호 주	26
-	-	독 일	46	중 국	79	중 국	74	중 국	10
기 타	169	기 타	166	기 타	151	기 타	184	기 타	18

3. 개정안의 검토

국적선택절차에 대한 사전 개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
- 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 1) 사회복무요원 (중 략) 10) 산업기능요원
-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이하 생략)
- 9) 「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서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중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남성은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규정¹⁰⁾을 사전에 알지 못하거나 기한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기간 도과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상대국의 공직 진출이 불가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개정안은 복수국적자 중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체류, 거주 경험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국적선택이 곤란한 경우를 배려하고,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를 보다 원활함으로써 국적이탈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다음 사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상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한 것은, 이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당해연도의 3월 31일을 의미하기도 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출생후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즉, 최장 18년 3개월간의 선택 기간이 주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¹¹⁾, 동 기간이

10)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불충분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¹²⁾.

둘째, 사회통념상 법률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2020. 9. 24) 이후¹³⁾,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이탈 특례조항을 2022년 9월에 신설¹⁴⁾하는 후속 입법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 만약 당해연도의 12월 31일 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장 17년 3개월간의 선택기간이 주어지게 될 것임.

12) 참고로 법무부는 현행법 체계 상 생일 도달 즉 “만”나이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해에 태어난 자가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는 같은 시기에 태어난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출생자를 한꺼번에 병역준비역에 포함시키는 병역법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동 사항의 해결은 병역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13)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2020. 9. 24. 2016헌마889)] 헌법불합치 결정요지(일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

14) 「국적법」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2.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3.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4.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5.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6.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허가 시의 구체적인 고려사항,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안 제13조제4항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신고기간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국적 선택 및 병역의무와 같은 중요한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측면과, 외국의 거소 확인 곤란 등 현지 사정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에 관한 개별통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측면 등에서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법무부는 이미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¹⁵⁾를 통해 국적 및 병역 안내서를 게시하고 있고, 재외공관에도 함께 배포하여 홈페이지 게시를 요청하는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57

15)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참고